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3. 13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3. 13.)

2.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의 통합으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지방분권균형발전법)」이 제정(20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)
 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 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위원회의 회의 소집 · 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조사 · 연구, 운영세칙 등(안 제5조 ~ 제6조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 폐지(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2. 1.~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시행('23. 7.10.)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